

新規性과 進歩性判斷

特許出願
 및 審判請求時의

文 滄 華
<辨 理 士>

이 세상에 없던 “物”을最初로 生產해내는 “方法”이나 그 “물”을 生산해내는 “裝置”라고하여 반드시 特許權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實用新案法에서나 意匠法에서도 이에 準하여 法으로規定하고 있다.

원래 工業所有權法이 생긴 理由는 各 法의 目的規程인 各 第 1 條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技術의 進步發展을 圖謀하고 國家產業發展에 寄與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產業政策 또는 社會政策上 規制를 要하는 部分에 限하여는 아무리 新規性과 進歩性을 갖춘 發明이나 考案이라고 하드라도 特許權이나 登錄權을 賦與할 수 없게 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關係法規를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特許를 받을수 없는 發明

特許法 第 4 條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 6 조의 규정에 不拘하고 特허를 받을 수 없다.

1. 飲食物 또는 嗜好物의 발명
2. 醫藥 또는 2以上의 의약을 混合하여 1의 의약을 調製하는 方法의 발명

3. 化學方法에 의하여 製造할 수 있는 物質의 발명
4. 原子核變換方法에 의하여 제조할 수 있는 불질의 발명
5. 物質自體가 지니는 性質에 따르는 用途의 발명
6.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紊亂하게 하거나 公衆의 衛生을 害할 염려가 있는 발명

實用新案登錄을 받을수 없는 考案

實用新案法 第 4 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前條의 규정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다.

1. 國旗 또는 默章과 同一하거나 類似한 고안
2. 公동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물난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에 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고안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는 意匠

意匠法 第 3 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에 대하여는 제 5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다.

1. 國旗, 國章, 軍旗, 默章, 褒章, 記章 其他 公共機關等의 포장과 外國의 국기, 국장 또는 國際機構 등의 文字나 標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2. 公동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물난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3. 他人의 業務에 關係되는 物品과 혼동을 가하여 염려가 있는 의장

위 特許法中 特記해둘 것은 그 규정에 음식물과 기호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과 기호물은 日常生活에 없어서는 않될 必要不可缺의 必須物이므로 万一 이들에게 獨占權을 認定할 경우에는 不當한 高價를 國民 모두가 치루어야 되는 威脅을 느끼게 된다.

故로 “물” 자체에는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물”을 제조하는 방법자체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該當되지 않는다. 이유인즉 음식물이나 기호물자체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같은 幣端은 없거나 稀少하기 때문이다.

음식물 또는 기호물자체에 특허권이 부여 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製造方法에 특허권의 効力이 미치게되나 “물”을 제조하는 방법자체에 限하여 特許權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하여 製造生產되는 물에 한하여 특허의 効力이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他方法에 의해 제조되는 “물”에는 効力이 미치지 않게 되는 데 緣由한다.

(参考로 附記하면 飲食自體에 特허권을 인정치 않고 있는 나라는 30餘個國이 된다)

의약에 대하여 特허권을 부여치 않는 이유는 음식물

의 경우와 完全同一하다. 의약자체에 特許權不認定國家는 70餘個國 임을 참고로 부기한다).

또한 化學方法에 의하여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이나 原子核變換方法에 의하여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國家產業政策上의 이유인 것이다.

즉 이들 발명은 多額의 研究費와 多數의 研究者의 協力에 의하여 이룩되는 것이므로 이 與件이 充分히 具備되지 않고 있는 現時點에서 이들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들에 관한 발명의 모든 것이 先進國에 의하여 占領되어 이들에 관한 우리나라 產業分野에 重壓을 빙계되는 까닭이라고 하겠다.

特許要件

特許法 第6條 ① 產業上利用할 수 있는 발명을 한자는 다음에 揭記한 발명을 除外하고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特許出願前에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또는公然히 實施된 발명

2. 特許出願前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領布된 刊行物에 記載된 발명

다만 외국에서 領布된 간행물의 種類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 特許出願前에 그 발명이 屬하는 技術의 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자가 前項 各號에 揭記한 발명에 의하에 容易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은 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實用新案登錄要件

實用新案法 第5條 ① 產業上利用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물품의 形狀構造 또는 組合에 관한 고안을 한자는 다음에 계기한 고안을 제외하고 그 고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1. 實用新案登錄出願前에 國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公然히 實施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 다만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種類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前項 各號에 계기한 고안에 의하여 極히 容易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없다.

意匠登錄要件

意匠法 第5條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意匠考案을 한자는 다음에 계기한 의장고안을 제외하고 그 의장

고안에 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1. 意匠登錄出願前에 國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實施된 의장

2. 의장등록출원 전에 國내 또는 國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다만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종류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3. 前各號에 계기한 의장에 유사한 의장

② 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전항 각호에 계기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創作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의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第6條(類似意匠) ① 意匠權者 또는 意匠登錄出願人은 自己의 登錄意匠이나 意匠登錄出願한 의장에만 유사한의장 (以下 類似意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類似意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類似意匠으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類似意匠에만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는 同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工業所有權法(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上 真正한 考案者나 發明者가 그 고안이나 발명을 公開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성이喪失되어 특허나 등록권을 받을 수 없음이 原則이나 아래와 같은例外規程이 있음을 참고로 계기한다.

發明의 新規性 摆制

特許法 第7條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發明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六月以內에 特許出願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자가 그 발명을 試驗하기 위하여 學術團體의 研究모임에서 發表하기 위하여 前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자가 그 발명을 자기의 의사에 反하여 前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權리를 가진자가 政府 또는 地方公共團體가 開設하는 博覽會 및 정부 또는 지방공동단체의 인가를 받은자가 개설하는 박람회에 出品함으로써 前條 第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權리를 가진자가 그 발명을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전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특허출원과 同時に 特許廳長에 提出하고 이를 說明할 수 있는 서류를 特許出願日로부터 30일 내에 특허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考案의 新規性 摘制

實用新案法 第6條 ① 實用新案登録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實用新案出願을 하면 그 고안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시험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연구모임에서 발표하기 위하여 前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의 고안을 자기의 意思에 반하여 前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 때

3.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정부 또는 지방공동단체가 개설하는 박람회 및 정부 또는 지방공동단체의 인가를 받은자가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前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고안을 정부의 인가를 받아 國外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前條 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실용신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說明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특허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意匠의 新規性 摘制

意匠法 第7條 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意匠考案이 다음 각호의 1에해 당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면 그 의장고안을 신규의 것으로 본다.

1.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그의 사고안을 시험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연구모임에서 발표하기 위하여 第5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그 의장고안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第5條 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한 때

3.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정부 또는 지방공동단체가 개설하는 박람회 및 정부 또는 지방공동단체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第5條 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의장고안을 정부의 인가를 받아 國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前條 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한 때

②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의장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說明할 수 있는 서류를 의장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三陽타이어 商號를 錦湖타이어로 바꿔

三陽타이어株式會社(代表: 朴祥求)는 6月 10日 光州工場에서 臨時株主總會를 갖고 商號를 錦湖타이어로 바꾸었다.

金星社 家電製品綜合展示會

株式會社 金星社(代表: 朴勝榮)는 6月 8日부터 25일까지 創立 20周年 紀念으로 美都波百貨店 4層 장미홀에서 金星家電製品綜合展示會를 열었다.

金星社 龜尾電子工高에 支援金

株式會社 金星社(代表: 朴勝榮)는 龜尾電子工業高等學校와 姉妹結緣을 맺고 年間 6,900萬 원의 教員指導費등을 支給키로 했다.



三養食品 江原 平昌에 診療所 建立

三養食品工業株式會社(代表: 全仲潤)는 5月 23日 醫療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는 働地住民들의 保健診療를 위해 江原道 平昌郡 太和面에 醫療法人 太和醫院診療所의 起工式을 가졌다.

太平洋化學 成德女中·女商高懸板式

太平洋化學工業株式會社(代表: 徐成煥)는 6月 10日 江南區 千戶洞所在 太平洋學院 成德女中·女商高의 懸板式을 가졌다.

現代自動車 全國巡迴教育實施

現代自動車株式會社(代表: 鄭世永)는 5月 29日부터 7月 12일까지 45일간에 걸쳐 78年度 第2次아프터

서어비스 全國巡迴教育을 實施했다.

종근당 忠正路에 社屋新築

주식회사 종근당(代表: 李鍾根)은 市內 西大門區 忠正路 3街에 地上 15層 地下 3層의 延建坪 6, 107坪規模의 社屋을 新築, 79年末竣工할 豫定이다.

三養社 電話番號 變更

株式會社 三養社(代表: 金相慶)는 6月 4일부터 다음과 같이 電話番號를 變更했다.
261~0161~9, 261~1641~9.

三豐工業 電話番號 變更

三豐工業株式會社(代表: 朴成俊)는 浦項市 所在 會社의 電話番號를 2~7091~7094.로 變更하였다.